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83회 임시회

# 검토 보고서

2026. 4. 21.(화)

| 검 토 안 건                                 | 발 의               |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br>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홍지광<br>의원 외<br>8명 |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안경위

- 제안자: 홍지광 의원 외 8명
- 제안일: 2026. 4. 10.
- 회부일: 2026. 4. 15. (의안번호 : 26-39 )

## 2. 제안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나. 지원대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제4조)
- 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마.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제9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3조
  -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1조, 제46조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 입법예고: 2026. 4. 1.~4. 6.(제출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홍지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를,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관한 사항을,
    -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사항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1조,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게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인의 고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 재활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대안으로 보충급여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검토의견

- 우리구 관내 등록장애인 수는 2026년 2월 현재 12,131명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은 108명 임. 관내 장애인 수에 비해 공공기관에서 고용하는 장애인 일자리는 한계가 있어 이번 조례 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된 민간단체에 대한 구의 지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임.

- 아울러 지원요건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설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담당부서   | 담당과장          | 담당팀장          |
|--------|---------------|---------------|
| 장애인복지과 | 김희선<br>(8880) | 이승익<br>(1681) |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 훈련수당
-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1항제5호

###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비용추계기간: 2027. 1. ~2031. 12.

###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br>(2027년) | 2차년도<br>(2028년) | 3차년도<br>(2029년) | 4차년도<br>(2030년) | 5차년도<br>(2031년) | 합계      |
|-------------|-------|-----------------|-----------------|-----------------|-----------------|-----------------|---------|
| 세입          | ○     |                 |                 |                 |                 |                 |         |
|             | 소계(a) |                 |                 |                 |                 |                 |         |
| 세출          | ○구비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210,000 |
|             | 소계(b)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210,000 |
| □ 총 비용(a-b) |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210,000 |

- 산출근거: 근로장애인 30명 월 100천원/ 훈련장애인 10명 월50천원 산정시

### 4. 재원조달 방안: 구비 100%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
| 자체<br>수입 | 소계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210,000 |
|          | 지방세수입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42,000 | 210,000 |
|          | 세외수입 등 |        |        |        |        |        |         |

### 5. 덧붙이는 의견: 사회복지제도 신설 협의 필요(복지복지부)

### 6. 작성자

|        |                  |
|--------|------------------|
| 작성자 이름 |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이수경 |
| 연락처    | 02-3183-1683     |

## 참고 자료

### 1. 관계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21조(직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 2. 우리구 등록장애인 현황

(2026. 2. 28현재)

| 등급        | 장애인수   | 지체    | 시각    | 청각    | 발달<br>(지적, 자폐) | 뇌병변   | 기타    |
|-----------|--------|-------|-------|-------|----------------|-------|-------|
| 계         | 12,131 | 4,786 | 1,399 | 1,928 | 1,206          | 1,229 | 1,583 |
| 심한        | 4,596  | 935   | 317   | 372   | 1,206          | 667   | 1,099 |
| 심하지<br>않은 | 7,535  | 3,851 | 1,082 | 1,556 | -              | 562   | 484   |

### 3. 우리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현황(보호작업장 4개소)

2025. 12. 31현재

| 구분                  | 마포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 우리마포보호작업장   | 마포푸르메직업재활센터   | 마리스타보호작업장                                   |
|---------------------|---|---|---|---|
| 위치                  | 매봉산로 18, 2층(상암동)  | 신촌로26길 10,3층 (대흥동, 우리마포복지관)                                   | 월드컵북로 494, B2층(상암동)   | 충북 충주시 산척면 지속골길 17                          |
| 면적                  | 404.95㎡(122평)   | 227.67㎡(68평)  | 706.3㎡(214평)  | 1241.23㎡(376평)                              |
| 시설장                 | 하강택   | 변성환   | 김재일   | 김창동   |
| 운영주체                |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 재단법인 푸르메  | 사회복지법인 마리스타 청소년복지재단                         |
| 최초위탁                | 2009.1.1.   | 2011.10.1.  | 2015.12.30.   | (설치일자)2004.4.1.                             |
| 조직구성                | 8명<br>(시설장1, 종사자7)<br>시비지원6, 자부담2                             | 5명<br>(시설장1, 종사자4)<br>시비지원5                                   | 5명<br>(시설장1, 종사자4)<br>시비지원4 구비지원1                               | 10명<br>(시설장1, 종사자9)<br>시비지원6 자부담2           |
| 주요사업                | 제과제빵, 청소용역, 소득방역  | 디퓨저, 고주파, 골프공 포장, 쇼핑백   | 임가공, 패션 약세사리 열수축포장  | 상장케이스, 문서파일류, 인쇄물, 판촉물인쇄                    |
| 이용인원                | 27(근로21, 훈련6)<br>심한장애 27명                                     | 23명(근로20, 훈련3)<br>심한장애 23명                                    | 26명(근로21, 훈련5)<br>심한장애 26명                                      | 32명(근로22, 훈련10)<br>심한장애 30명/<br>심하지않은 장애 2명 |
|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1인)    | 364천원   | 172천원   | 199천원   | 1,844천원                                     |
| 훈련장애인 월평균 훈련수당 (1인) | 92천원  | 89천원  | 80천원  | 405천원                                       |
| 2026년 예산            | 운영비: 430,685천원<br>(시비 90: 구비 10)<br>관리비: 12,000천원<br>(구비 100) | 운영비: 320,703천원<br>(시비 90: 구비 10)<br>관리비: 15,000천원<br>(구비 100) | 운영비: 292,646천원<br>(시비 90: 구비 10)<br>인건비 및 관리비: 50,000천원(구비 100) | 운영비: 431,411천원<br>(시비 100, 재배정)             |

## 4. 타 자치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현황

(2025.12 기준 단위: 명/ 천원)

| 구분          | 시설 수        | 근로장애인 수      |                  | 훈련 장애인 수    | 월 평균 임금      |              |             | 장애인구수         | 순위        |
|-------------|-------------|--------------|------------------|-------------|--------------|--------------|-------------|---------------|-----------|
|             |             | 장애인 수        | 최저임금 적용          |             | 근로장애인        |              | 훈련 장애인      |               |           |
|             |             |              |                  |             | 상위30%        | 하위30%        |             |               |           |
| 서울시         | 5           | 159          | 100(62.9%)       | 33          | 1,367        | 716          | 134         |               |           |
| <b>평균</b>   | <b>5.12</b> | <b>102.4</b> | <b>27.8</b>      | <b>52.1</b> | <b>785.2</b> | <b>360.9</b> | <b>94.8</b> |               |           |
| 종로구         | 3           | 105          | 0(0.0%)          | 0           | 631          | 301          | 22          | 5,538         | 24        |
| 중구          | 1           | 20           | 18(90.0%)        | 0           | 2,096        | 532          | 0           | 5,094         | 25        |
| 용산구         | 1           | 13           | 0(0.0%)          | 16          | 238          | 150          | 100         | 6,695         | 23        |
| 성동구         | 4           | 49           | 18(36.7%)        | 44          | 419          | 302          | 125         | 10,603        | 21        |
| 광진구         | 3           | 53           | 3(5.7%)          | 38          | 504          | 212          | 122         | 11,981        | 19        |
| <b>동대문구</b> | <b>4</b>    | <b>49</b>    | <b>11(22.4%)</b> | <b>40</b>   | <b>454</b>   | <b>314</b>   | <b>52</b>   | <b>15,039</b> | <b>14</b> |
| 종랑구         | 5           | 89           | 7(7.9%)          | 74          | 598          | 316          | 106         | 19,988        | 6         |
| 성북구         | 1           | 18           | 0(0.0%)          | 12          | 448          | 348          | 130         | 16,825        | 10        |
| 강북구         | 2           | 45           | 35(77.8%)        | 22          | 1,068        | 847          | 76          | 16,609        | 11        |
| 도봉구         | 3           | 77           | 50(64.9%)        | 18          | 836          | 683          | 25          | 15,120        | 13        |
| 노원구         | 9           | 132          | 33(25.0%)        | 141         | 624          | 359          | 96          | 25,361        | 2         |
| 은평구         | 8           | 127          | 7(5.5%)          | 88          | 465          | 206          | 118         | 21,099        | 3         |
| 서대문구        | 2           | 33           | 12(36.4%)        | 16          | 1,361        | 230          | 30          | 11,710        | 20        |
| <b>마포구</b>  | <b>4</b>    | <b>84</b>    | <b>13(15.5%)</b> | <b>24</b>   | <b>792</b>   | <b>498</b>   | <b>153</b>  | <b>12,178</b> | 18        |
| 양천구         | 4           | 63           | 21(33.3%)        | 51          | 782          | 211          | 74          | 17,713        | 9         |
| 강서구         | 10          | 215          | 18(8.4%)         | 101         | 486          | 146          | 70          | 27,618        | 1         |
| 구로구         | 9           | 299          | 113(37.8%)       | 33          | 1,188        | 416          | 169         | 19,579        | 7         |
| 금천구         | 7           | 108          | 26(24.1%)        | 84          | 739          | 397          | 178         | 12,227        | 17        |
| 영등포구        | 2           | 61           | 30(49.2%)        | 14          | 1,105        | 408          | 80          | 14,774        | 15        |
| <b>동작구</b>  | <b>4</b>    | <b>82</b>    | <b>27(32.9%)</b> | <b>54</b>   | <b>871</b>   | <b>292</b>   | <b>67</b>   | <b>13,911</b> | <b>16</b> |
| 관악구         | 4           | 168          | 122(72.6%)       | 11          | 1,238        | 560          | 103         | 20,008        | 5         |
| 서초구         | 4           | 84           | 28(33.3%)        | 64          | 905          | 415          | 33          | 10,179        | 22        |
| 강남구         | 9           | 202          | 65(32.2%)        | 100         | 705          | 438          | 115         | 15,517        | 12        |
| 송파구         | 12          | 150          | 5(3.3%)          | 147         | 521          | 197          | 150         | 20,115        | 4         |
| 강동구         | 13          | 235          | 15(6.4%)         | 112         | 556          | 246          | 176         | 19,453        | 8         |

※ 음영: 조례有/ 진한글씨: 훈련수당 등 지원